

<오현준 교육학 끝짱노트 개정2판> 정오표(2쇄 기준)

쪽수	관련 부문	현 교재 내용	수정 내용														
31	(2) 표	(2) 고등학교 유형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 <table><tr><td>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</td><td>특수 분야(과학계열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◎ 외국어계열, 국제계열 고등학교 조항-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 실행)</td></tr><tr><td>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</td><td>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</td></tr><tr><td>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</td><td>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(예) 자율고교, 외국어고등학교, 국제고등학교 포함 ◎ 자율고등학교 조항 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3.1. 실행)</td></tr></table>	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	특수 분야(과학계열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◎ 외국어계열, 국제계열 고등학교 조항-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 실행)	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	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	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	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(예) 자율고교, 외국어고등학교, 국제고등학교 포함 ◎ 자율고등학교 조항 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3.1. 실행)	(2) 고등학교 유형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 [시행 2024.4.25.] <table><tr><td>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</td><td>특수 분야(과학계열, 외국어·국제계열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</td></tr><tr><td>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</td><td>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</td></tr><tr><td>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</td><td>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자율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포함</td></tr><tr><td>자율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의 3-4)</td><td>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→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(사전 교육부장관 동의) 연장 가능</td></tr></table> ※ 법률 개정(시행 2024.4.25.) ① 자율 고등학교 부활 ② 외국어·국제계열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포함됨.	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	특수 분야(과학계열, 외국어·국제계열 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	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	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	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	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자율고등학교 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포함	자율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의 3-4)	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→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(사전 교육부장관 동의) 연장 가능
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	특수 분야(과학계열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◎ 외국어계열, 국제계열 고등학교 조항-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 실행)																
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	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																
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	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(예) 자율고교, 외국어고등학교, 국제고등학교 포함 ◎ 자율고등학교 조항 삭제(2020.2.28. 개정 / 2025.3.1. 실행)																
특수목적 고등학교 (시행령 제90조)	특수 분야(과학계열, 외국어·국제계열 , 예술계열, 체육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-Meister School-)의 전문적인 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																
특성화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)	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																
일반 고등학교 (시행령 제76조의3)	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자율고등학교 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포함																
자율 고등학교 (시행령 제91조의 3-4)	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→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(사전 교육부장관 동의) 연장 가능																
336	(2)-③-㉠ 법령 박스 제목	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시행 2024.1.1. ~ 2026. 13 .31.)	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시행 2024.1.1. ~ 2026. 12 .31.)														